

## 부천시먹는물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9. 6. 24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9. 6. 25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99. 7. 2)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가. 제안이유

○ 먹는물관리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99. 4. 22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지정에 따라 수질검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부천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정수과장을 운영책임자로 하며 검사인은 환경부 고시기준에 정한 적정인원 이상으로 구성 운영함(안 제3조)
- 수질검사대상은 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지하수, 목욕장 욕수, 수영조 욕수로 함(안 제5조)
- 시설물의 허가, 신고용, 정기검사용 수질검사 의뢰시는 관계공무원이 신청인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 봉인·봉합한 후 신청인이 의뢰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6조)
- 수질검사 의뢰시는 검사신청서와 검사용 시료소요량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
- 수질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금액을 적용하며 검사의뢰시 수수료를 납부서로 납부함(안 제8조제1항, 제2항)
- 수질검사는 처리기한까지 검사를 완료하고 소장은 의뢰인에게 검사성적서를 교부함(안 제10조제1항)
- 수질검사 수수료의 면제는 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내 먹는물공동시설, 간이상수도 등이며 허가, 신고용 수질검사 이외의 법정 정기수질검사는 수수료의 2분의 1 감면(안 제11조제1항, 제2항)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관내 먹는물 검사대상 업소수는?	○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는 전부 검사대상으로 약 2,230개 업소임

- 먹는물검사기관을 운영할 경우 주민에게 오는 이익은 있는가?
- 타지역에서도 우리 시에 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가?

- 현재의 먹는물 검사를 위하여 안산시 등에서 검사를 해야 하는 불편해소와 관내지역의 주민에게는 수수료를 감면할 것임.
- 우리 시 뿐 아니라 인근 시·군 어느 것이든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타시·군의 검사를 위하여 홍보를 철저히 할 계획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요지

- 인근 시·군의 먹는물 검사를 많이 하여 세수증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더 철저한 홍보계획을 세워야 함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먹는물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

의안번호	제173호
의결년월일	99. 7. 8 (제71회)

제출년월일 : 1998. 6. 2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제정이유

- 먹는물관리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99. 4. 22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지정에 따라 수질검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골자

- 부천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정수과장을 운영책임자로 하며 검사인원

은 환경부 고시기준에 정한 적정인원 이상으로 구성 운영함(안 제3조)

- 수질검사대상은 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지하수, 목욕장 욕수, 수영조 욕수로 함(안 제5조)
- 시설물의 허가, 신고용, 정기검사용 수질검사 의뢰시는 관계공무원이 신청인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 봉인·봉합한 후 신청인이 의뢰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6조)
- 수질검사 의뢰시는 검사신청서와 검사용 시료소요량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
- 수질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금액을 적용하며 검사의뢰시 수수료를 납부서로 납부함(안 제8조제1항, 제2항)
- 수질검사는 처리기한까지 검사를 완료하고 소장은 의뢰인에게 검사성적서를 교부함(안 제10조제1항)
- 수질검사수수료의 면제는 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내 먹는물공동시설, 간이상수도 등이며 허가, 신고용 수질검사 이외의 법정 정기수질검사는 수수료의 2분의 1 감면(안 제11조제1항, 제2항)

## 부천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와 명칭) 먹는물질검사기관은 부천시상하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정수과 내에 두며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제28호 부천시상하수도사업소"라 칭한다.

제3조(구성) 상하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수질검사기관의 장으로, 정수과장을 운영책임자로 하고 검사인원은 환경부 고시기준에 정한 적정인원 이상으로 구성 운영하며, 그 직급 및 인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업무) 정수과의 기존 수질시험업무와 병행하여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수질검사대상 및 범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검사대상) 이 조례에 의한 수질검사대상은 수도법 제19조에 규정한 정수, 먹는물관리법 제3조에 규정한 먹는물·샘물·먹는샘물·먹는물공동시설, 지하수법 제20조에 규정한 지하수(음용·생활·농업·공업용수), 공중위생법 제12조에 규정한 목욕장 욕수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9조에 규정한 수영조 욕수에 한한다.

제6조(시료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각종 시설물의 허가용, 신고용, 정기검사용 수질검사 의뢰시는 관계공무원이 신청인의 입회하에 직접채수, 봉인·봉합한 후 신청인이 의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용

수질검사의 경우는 봉인·봉합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채수하여 검사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수질검사 의뢰) 사업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신청서와 "별표1"에 정한 검사용 시료소요량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에 의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수질검사의 수수료는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금액에 의하고 동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내용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금액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에 "별지 제4호서식"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성적서 재교부신청시에도 또한 같다.

③시료채취 또는 검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의뢰인은 당해 출장공무원의 여비를 "별지 제4호서식" 납부서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부천시여비조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9조(관계공무원의 출장범위) ①수질검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은 관련법령에 의거 사업소 소속 직원이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거나 시험기구를 지참하여 출장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수질검사를 위한 출장에는 공무원 및 운전원 포함 2명 1개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검사시료 및 기구, 기타 기기의 파다로 1개조의 인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뢰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검사성적서의 교부)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수질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검사성적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②의뢰받은 수질검사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처리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검사성적서는 교부된 후 의뢰인의 주소·성명 등의 오자·탈자의 경우를 제외한 정정은 일체 허용하지 아니한다.

④검사성적서 교부 및 검사결과의 통보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자의 원에 의하여 직접 교부할 수 있다.

⑤제1항에 의하여 교부된 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의 감면) ①국가기관 등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기수질검사를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제8조에 규정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 민방위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등의 수질검사

- 2. 부천시 관내지역의 지정된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 등) 및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
- 3. 기타 공익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질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수수료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 1. 허가, 신고용 수질검사가 아닌 관내 검사대상의 법정 정기수질검사
-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타법령에 의거 수수료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관련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수질검사 등의 불응)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1. 관계공무원의 봉인·봉합이 필요함에도 봉인·봉합이 없을 때
- 2. 봉인·봉합의 훼손 또는 확인이 불분명할 때
-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필요한 시료소요량보다 부족할 때 또는 지정 채수 용기가 아닐 때
- 4. 시료 채취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시료 채취일부터 상당기일이 경과되어 시료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
- 5. 기타 사유로 수질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수질검사가 불가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13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시료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 및 여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검사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는 검사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다

제15조(성적원본의 말소) ①소장은 검사 의뢰인이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한 검사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사유, 검사한 시료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조례)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 제5조의2(수질검사 시험의뢰) 내지 제5조의8(검사시험불응)을 삭제한다.

②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 제3조(업무)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관리

[별표 1]

## 검사종별 처리기간 및 시료소요량(제7조 관련)

검 사 종 별		검사항목	처리기간	시료 소요량
먹는 물 먹는물공동시설		45개 항목	20일	○ 세균학적 검사 : 1리터 이상 ○ 이화학적 검사 : 4리터 이상
샘 물		47개 항목	20일	○ 세균학적 검사 : 2리터 이상 ○ 이화학적 검사 : 4리터 이상
먹는 샘 물		51개 항목		
지 하 수	음 용 수	44개 항목	20일	○ 세균학적 검사 : 1리터 이상 ○ 이화학적 검사 : 4리터 이상
	생활용수	15개 항목	14일	○ 세균학적 검사 : 1리터 이상 ○ 이화학적 검사 : 4리터 이상
	공업·농업용수	14개 항목	14일	○ 이화학적 검사 : 4리터 이상
목 욕 장 욕 수	원 수	5개 항목	7일	○ 세균학적 검사 : 1리터 이상 ○ 이화학적 검사 : 1리터 이상
	욕 조 수	3개 항목	7일	○ 세균학적 검사 : 1리터 이상 ○ 이화학적 검사 : 1리터 이상
수영조의 욕수		5개 항목	7일	○ 세균학적 검사 : 1리터 이상 ○ 이화학적 검사 : 1리터 이상

비고 1. 세균학적 시료와 이화학적 시료는 동일하여야 함.

2. 세균학적 시료는 평균용기에 채수하여야 함.

3. 개별 검사항목 신청시 10개 항목 미만은 7일, 10개 항목 이상은 14일, 20개 항목 이상은

20일 소요

## [별표 2]

## 1. 수질검사 수수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번호	검 사 항 목	수수료	번호	검 사 항 목	수수료
1	일 반 세 균 (저 온)	4,200	16	중 발 잔 류 물	2,800
2	일 반 세 균 (중 온)	4,200	17	불 소	5,800
3	대 장 균 균	4,600	18	폐 뇨	3,800
4	수 소 이 온 농 도	400	19	시 안	6,800
5	색 도	600	20	철	6,600
6	탁 도	400	21	망 간	6,600
7	냄 새	400	22	아 연	6,600
8	맛	400	23	동	6,600
9	암 모 니 아 성 질 소	2,800	24	6 가 크 림	4,600
10	질 산 성 질 소	2,800	25	카 드 림	6,600
11	염 소 이 온	1,200	26	알 루 미 늄	6,600
12	황 산 이 온	2,900	27	수 은	4,600
13	과 망 간 산 칼 림 소 비 량	2,800	28	비 소	4,600
14	세 계	7,800	29	납	6,600
15	경 도	2,800	30	세 레 늄	6,600

번호	검 사 항 목		수수료	번호	검 사 항 목		수수료
31	디클로로메탄	11,500	11,500	42	다이아지논	11,500	11,500
32	벤젠		11,500	43	파라티온		11,500
33	톨루엔		11,500	44	말라티온		11,500
34	크실렌		11,500	45	페니트로티온		11,500
35	에틸벤젠		11,500	46	카바릴	11,500	
36	1.1 디클로로에틸렌		11,500	47	분원성연쇄상구균	7,600	
37	사염화탄소	11,500	48	녹농균	6,600		
38	1.1.1 트리클로로에탄	11,500	11,500	49	아황산환원협기성포자형성균	4,600	
3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500	50	살모넬라	11,600	
40	트리클로로에틸렌		11,500	51	슈렐라	11,600	
41	총트리할로메탄		11,500				

비 고 : 위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시험항목에 대하여는 그 시험항목과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 금액에 따른다. 다만,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 별표 시험수수료금액표 제10호 수질검사의 항목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이에 따른다.

2. 검사성적서 재교부수수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수 수 료	비 고
검사성적서재교부	500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b>검 사 신 청 서</b>			처리기간
				7, 14, 20일
신 청 인	법인또는기관명			
	대 표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 )
시료내역	시료종류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샘터, 우물),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영조 욕수, 목욕장욕수(원수, 욕조수)		
	채수장소		채수일시	년 월 일 시
	검사목적	정기, 제출, 참고, 재검용	채수방법	지 참 시 료( ) 검사자 현장채취( )
	검사의뢰 항 목			
	봉합봉인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① 시험의 결과는 검사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포장 등에 이를 사용 또는 표시할 수 없음. ② 참고용은 관계공무원이 봉인·봉합하지 않은 시료로서 검사성적서는 제출(인·허가 등) 및 기타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				
부천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span style="float: right;">서명 또는 날인</span> 부천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붙임> 시료 : ①				수수료

접수번호 : \_\_\_\_\_

**접 수 증**

의뢰인주소		성명	
시료명		검사항목수	종
검사목적	정기( ), 제출( ), 참고( ), 재검용( )	수수료	원
처리기간	년 월 일까지	수수료납부확인	(인)
담당자 : (인) 년 월 일 부천시상하수도사업소장			

[별지 제2호서식]

# 기 관 명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받 음 :

보 내 : 부천시상하수도사업소장(인)

제 목 (

)수질검사 성적서 교부

부천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질검사성적서를 교부합니다.

## 1. 시료내용

시 료 명		접수일자/ 접수번호	. . . /
의뢰자명			
채수장소		채수일시	
검사목적			

## 2. 수질검사 결과

검사항목	기 준	결 과	검사항목	기 준	결 과
판 정					
비 고					

이 성적은 제시된 시료에 한함. 의뢰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 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 납입고지서

제 호	연도	회계
(관)	(항)	(목)
소관청 : 부천시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수수료		
금액 : _____ (₩ )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부천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	
(납부자)	귀하	

### 영수필통지서

제 호	연도	회계
(관)	(항)	(목)
소관청 : 부천시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수수료		
금액 : _____ (₩ )		
위 금액을 납부하였기에 영수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출납금융기관	☑	
기업출납원	귀하	

### 영수증

제 호	연도	회계
(관)	(항)	(목)
소관청 : 부천시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수수료		
금액 : _____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출납금융기관	☑	
(납부자)	귀하	